



미디어센터 규정

제정일	2008. 1. 1
개정일	2021.10. 1
개정차수	4차
담당부서	미디어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센터의 역할) 센터는 본교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신지식인으로서의 안목과 소양을 갖추는 데 기여한다.

제 3조 (사업)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방송, 대학 신문 발행 (개정 2021.10. 1)
3. 미디어센터 장비의 관리 및 대여 (개정 2021.10. 1)
4. 교내 각 부서 및 학과의 콘텐츠 제작 지원
5. 외부 기관과의 콘텐츠 교류
6. 교내 영상·음향기기 기술 자문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4조 (삭제 2021.10. 1)

제 5조 (조직) 센터는 입학홍보처 소속으로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미디어 콘텐츠 팀, 학보팀을 둔다. (개정 2021.10. 1)

제 6조 (구성) 센터는 센터장, 책임교수, 직원, 조교 및 학생기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1)

제 7조 (임면) 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책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2.13, 2014. 5. 1)

② 각 팀의 기자는 재학생으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2.13)

제 8조 (임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을 관장한다.

② 책임교수는 센터장을 도와 세부 업무를 수행한다.

제 9조 (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제10조 (콘텐츠 내용) 각 팀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방송 및 대학 신문을 발행하며, 그 내용은 학생

들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되,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1.10. 1)

1. 본교 구성원의 동향
2. 학과·학생의 대내·외 활동 소식
3. 교내 기관의 행사, 전달 사항
4. 학생 자치기관 관련 소식
5. 학생들의 문화 활동 소개
6. 취업 정보
7. 자격증 정보
8. 진학·유학 정보
9. 기타 유익한 정보

제10조의 2 (취재활동의 보장) 학교는 학생기자들의 취재와 자료수집 등 언론활동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한다.

[본조신설 2014. 5. 1]

제11조 (방송편성) ① 방송편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방학기간 중 결정한다.

② 방송편성은 콘텐츠 제작에 관한 내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방송편성은 재난, 재해 등과 같은 사회 통념상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 (신문발행) ① 교내·외 소식을 수집하기 위하여 취재 활동을 하고 학교 언론의 창달 및 학습 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 4회 이상 대학 신문을 발행한다. (개정 2020. 3. 1, 2021.10. 1)

② 학생들의 문예 작품(시, 소설, 기행문, 콩트, 희곡, 만화 등)을 수시 공모하여 이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게재한다.

③ 교수들의 저술, 작품 발표, 수상 실적 등을 소개한다.

제 4 장 기자재 및 시설 관리

제13조 (기자재 및 시설 관리) 센터 직원은 미디어 제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고, 기자재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사용자) ① 본교 구성원은 방송장비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기자재 및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기자재 및 시설의 대여 신청에는 콘텐츠 제작기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제목
2. 콘텐츠 기획 의도
3. 콘텐츠의 스토리
4. 콘텐츠 제작 일정
5. 콘텐츠 제작 장소

③ 녹화테이프를 디지털화 할 경우 센터내의 전용 녹화기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④ 제작된 콘텐츠는 디지털매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 편집권과 방송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 기자재 및 시설을 대여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관련 작품(취업 동영상 자료, 졸업작품 등)

2. 교내 교육용

3. 교내 행사 및 교내 기관의 정보

⑥ 기자재 및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손·망실은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방 송 장 비 및 시 설 사 용 신 청 서		결	담 당	팀 장	미디어 센터장
		재			
콘텐츠명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일간) 20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신청목록					
사용자 의무	1. 캠코더로 녹화된 테이프는 미디어센터에서만 디지털화 작업을 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장비 및 시설을 대여 사용시 손·망실에 대해 변상을 책임질 것입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성명 (인)</div>				
사용목적					
기 타 (연락처/지원사항)					
상기 목적으로 기자재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div>					
신청 담당자					
기관명(학 과) : 직 위 : 성 명 : (인)					
반납 확인란	상 태 :		성 명 :		

